

르노 그룹 노동자 기본권 선언

르노는 기업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 전략은 경영성과, 우수한 생산품, 국제경영발전, 근로자의 참여, 소비자 만족도와 사업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실천되고 있다.

르노는 르노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르노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투명한 그리고 공정한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원칙들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발전, ILO의 기본권, 그리고 2001년 7월 26일에 채택한 UN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추구하고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르노와 르노 노동자 협의회는 국제금속노련과 함께 사회적 책무가 장기적 성공의 가장 주요한 사안이라는 믿음에서 다음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1. 산안과 노동조건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르노 그룹사의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다.

르노는 유럽연합의 기준을 산재 예방의 모델로 보고 있다. 이어서 르노그룹의 노동조건 정책 속에 그룹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을 만들었다. 르노는 이 정책을 해당 검사와 활동계획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한다.

부품사와 연관되는 분야 중에서 하나는 작업장의 위험한 요소를 예방하한 르노 정책을 부품사에서 정책적으로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르노는 훌륭한 의사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르노는 특히 HIV/AIDS 예방과, STD (성행위로 전이되는 전염병)과 약물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는 해당국에서 예방정책을 펴고 있다.

2. 아동노동금지조항

ILO 138 조에서 명시된 최저 노동연령에 대하여 르노는 해당국에서 지정한 정규 학습을 받아야 할 연령보다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사항이든 15세 미만 연령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부품사와 르노 서비스 공급

업체들은 르노와 사업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강제노동 금지

르노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반대하며 ILO 규정 29 조와 105 조항에 따라서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부품사와 르노 서비스 공급 협력업체도 르노와 사업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4. 평등

르노는 ILO 111 조에 따라서 작업장내에서 어떤 이유든지간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시에는 노동자의 능력과 기술을 근거로 하여 고용을 할 것이며 이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연령, 사회적 출신성분, 가족상황, 사회적 성, 성별 차이, 장애, 정치, 노동조합이나 종교, 민족, 국가 혹은 인종으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책은 르노에 고용된 개인과 여러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르노 그룹 내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르노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사내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돕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5. 일자리

르노는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사내일자리 재배치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자들을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한 가능한 경우, 이들을 르노그룹 계열사안에서 다른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6.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

르노는 전 세계노동자들 개개인 노동자들에게 연령과 지위를 막론하고 작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7. 노동시간과 유급 휴가

해당 국가나 지역 그리고 해당 노동자 조직과 함께, 르노는 노동시간을 기업의 여러 부문의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정할 수 있고 이는 노동자들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법과 르노가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국의 경영 관례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8. 임금

르노는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원칙을 인정한다. 또한 이는 ILO 100 조항에 따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따른다.

9. 노동자 대표

해당 노동자 조직에 포함되어 있거나,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자들이 르노 그룹내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대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르노는 s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완벽히 존중을 하도록 해야 한다. 즉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와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이는 ILO 조항 87 조에 명시되어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각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인정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르노는 단체협상의 자유를 명시한 ILO 조항 98 조를 준수한다.

르노는 또한 1998 년 86 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존중의 원칙과 기본권리인정을 준수한다.

10. 하청업체와의 관계

르노는 국제협약에 대한 내용을 협력 업체에 알려야 할 것이며 이들이 본 협약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들 협력업체가 해당 원칙을 자신의 해당 사업장에 실천하도록 고무하도록 한다. 본 협약 원칙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과 채택은 장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실행된다.

CGT	필리페 노엘
CCOO	오나콤 아리아스 말레고
CSC	진 파스
FO	라우렌트 스킨
UGT	알레잔드로 두란 모레노
CFE/CGC	제라드 블로